

솔브릿지-국제경영교육원운영규정 (Solbridge International School of Business)

제 정 2007. 9.

제1장 총 칙

제1조 (명칭) 본 교육원은 우송대학교 부설 솔브릿지 국제경영교육원(이하 “교육원”이라 한다)이라 칭한다.

제2조 (설립목적) 본 교육원은 21세기 글로벌경영 및 세계화 시대를 이끌어 나갈 경영전문인력을 양성한다.

제3조 (사업) 본 교육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.

1. 국내외 학생의 아시아 글로벌경영 전문인력양성 교육
2. 글로벌경영기업과의 산학연계를 통한 글로벌경영전략 컨설팅
3. 글로벌경영관련 벤처 운영 및 기술지원
4. 글로벌경영교육분야에 대한 전문교육과정 및 교재개발
5. 기타 본 교육원의 목적에 기여하는 사업

제2장 조직

제4조 (원장) ① 본 교육원에는 원장과 부원장을 두며, 학교법인 우송학원 교원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
② 원장은 본 교육원을 대표하며 업무전반을 총괄하고,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유고 시 이를 대신하여 직무를 수행한다.

제5조 (직원) 본 교육원에는 필요에 따라 직원, 행정조교, 실습조교 및 근로학생을 둘 수 있으며, 이들은 원장의 명을 받아 교육원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. 직원의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독립채산제 운영규정 및 우송학원 관련규정에 따른다.

제6조 (교원 및 시간강사의 임용) 본 교육의 교육을 위하여 강의담당 교원 및 시간강사를 다음과 같이 임용한다.

1. 교원이라 함은 전임교수, 특임교수, 겸임교수를 말하며, 우송학원의 교원임용기준에 따라 임용하며, 그 처우는 상호계약에 의하되 우송학원의 기준을 준용한다.
2. 시간강사는 본 교육원의 자체기준에 따라 원장이 위촉한다.

제7조 (운영위원회) ① 본 교육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- ② 위원회는 원장을 포함하여 원장이 위촉하는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.
- ③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-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다만, 가부동수일 경우, 위원장이 결정한다.

⑤ 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1. 교육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2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
4. 교육인원 및 교육비에 관한 사항
5.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6. 기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

제3장 회계

제8조 (회계년도) 본 교육원 회계연도는 우송학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9조 (예결산) ① 원장은 매년 12월중 익년도 예산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를 거쳐 익년 1월 중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회계집행에 관한 결산보고서는 2월 말일까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.

제10조(수입원) 본 교육원 운영경비는 교육비, 대학보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.

제4장 시행세칙 등

제11조 (시행세칙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2조 (기타) 본 교육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령)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